

## PART 3 지역자산화 사례 소개

### 충남 서천 사회적 기업 자이언트

#### 청년 주거 공간 제공으로 청년 유입 촉진

6년 이상 비어있던 지역의 낡은 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서천에서 일하며 살고자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유부역 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활성화 도모

### 경남 거제 예비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

#### 게스트하우스 공간마련으로 이주청년 정착 도모

조선업 근로자 대상 숙박건물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공동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숙소 제공, 지역주민과 청년이 협업하여 거제 인근 섬 등 자연경관을 즐기는 캠핑거리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



## PART 4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(MOU)체결

### ☞ 협약기관

· 행정안전부 - 농협은행 - 신용보증기금

### ☞ 협약내용

· '19년 시범사업 및 '20~22 본사업 저리대출·보증 제공의 협약체결 ('19.10.21)

행정안전부 사업 총괄,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, 협력사항 조정

농협은행 37.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

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 (37.5억원)의 10배(375억원) 보증, 건당최대 5억원 한도 내 100% 보증 제공



우리 곁에

반가운 변화

# 주민이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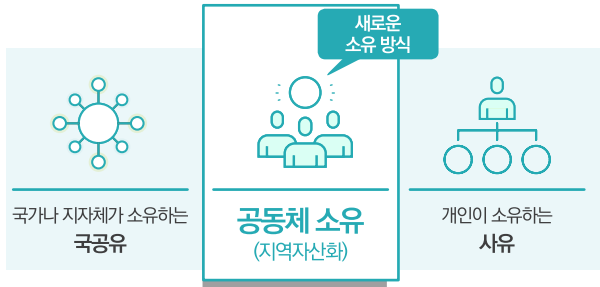
## PART 1 지역자산화 개념 소개

### 지역자산화 정의

- 지역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건물이나 토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
- 시민자산화, 공동체자산화,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림

### 지역자산화 등장배경

- 도심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(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내몰림)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격차 확대
-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는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로 인한 지역 쇠퇴
- ⇒ 지역의 공간을 공동체가 직접 소유 및 운영하는 지역자산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및 유휴공간 증가 방지로 지역활성화 도모



### 지역자산화 의의

#### 1) 국공유(國公有)나 사유(私有)가 아닌 새로운 소유방식

- 국공유의 경우 공공성은 보장되지만 자산활용에 있어서 경직성과 비효율 성이 뒤따를 수 있고
- 사유의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지만 자칫 과도한 수익추구에만 사용 될 수 있는데
- 지역자산화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결정함으로써 국공유와 사유의 단점을 보완

#### 2)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

- 안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
-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, 관리, 이용,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



## PART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소개

### 지원내용

**내용**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유휴공간 매입비 (시설 및 운전자금) 대출 지원

**대상**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

(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) ※ 소유와 운영에서 지역주민 참여계획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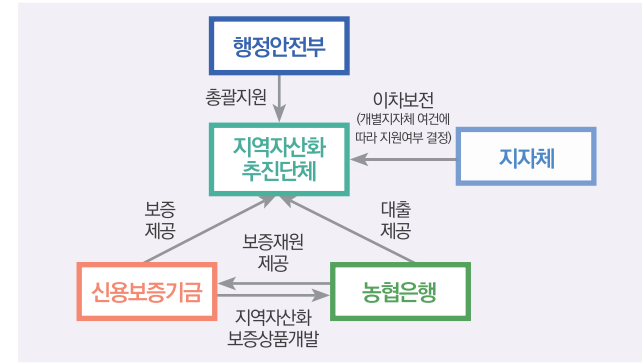
**규모** 연간 약 25건 예정('20~'22년 총3년간 약 75건 예정, 1건당 5억원 한도 내 100% 보증을 통한 대출지원)

**지원조건** 융자금리 3.5% 내외 (20.1월 기준, 민간단체 부담 2.5%, 지자체 이차보전 1%)  
 ※ 민간단체 부담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 
 보증료율 0.5% (민간단체 부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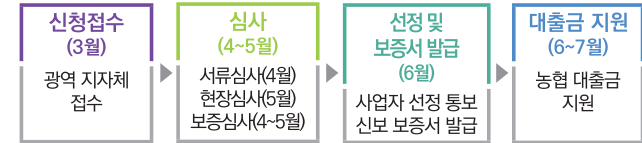
### 유의사항

-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%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
-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자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

##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체계도



### 추진일정



### 신청방법

**접수방법**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**제출서류**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(인증서 등 사본), 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

※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**접수기간** 3월 5일(목) ~ 3월 31일(화)

**접수장소**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담당부서

※ 문의 :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-205-3417~8  
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-430-4338

※ 이차보전 문의는 각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문의